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직권말소 사전 예고 공고

『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 제24조(폐업 및 직권말소) 제2항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4조(직권말소의 확인 등)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 말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(예고)합니다.

※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

2024년 7월 22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- 예정된 처분의 제목 : **직권말소**
-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: 영업 폐지일로부터 7일 이내 폐업 신고 미이행
-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: 2024. 7. 22.(월) ~ 8. 23.(금) (32일간)
- 법적근거 : 『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
- 대상업체

연번	상호명	소재지	대표자
1	라쿠 코인 노래연습장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물길 40, 3,4층 (창천동)	오O환
2	힐링 노래연습장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물길 17, 지층 (창천동)	박O찬
3	도시.락 노래연습장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물길 62, 7층 (창천동)	강O경

- 공고문 게시장소 : 서대문구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

7. 기타 사항

가.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(24. 8. 23.) 내에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나.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,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
다. 의견제출처 :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(서대문구 연희로 248, 5층)

☎02-330-1127, 팩스 02-330-1430